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
----------	-----

제출년월일 : 2015. 5. 29.

제출자 : 강남구청장

## 1.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른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음.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 제4조 내지 제9조 삭제
- 나.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삭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역보건법」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

수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5. 4. 17. ~ 2015. 5.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 ----- -----.</p>
<p>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의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삭 제>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  
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처  
분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  
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  
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  
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  
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  
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  
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  
(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  
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

<삭 제>

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  
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6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  
식에 의거 지체 없이 관할 법원  
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제6조제1항에 따  
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제8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구  
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에 따른다.

<삭 제>

##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b>처 분 사 전 통 지 서(의견제출통지)</b>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는 곳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소재지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 근거			
6. 의견 제출	기관명		부서명
	주소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b>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인)</b>			
<p>〈의견제출시 유의사항〉</p> <p>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p> <p>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시오.</p> <p>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p>			

## 개 정 안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b>의 건 제 출 서</b>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b>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b>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 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한 중복사항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개정안이 아님)

3. 미첨부 사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한 중복사항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의약과 진료지원팀 의료기술7급 고정만(3423-7162)